

화학물질 수입·제조 시 행정절차 안내

고려대학교 안전관리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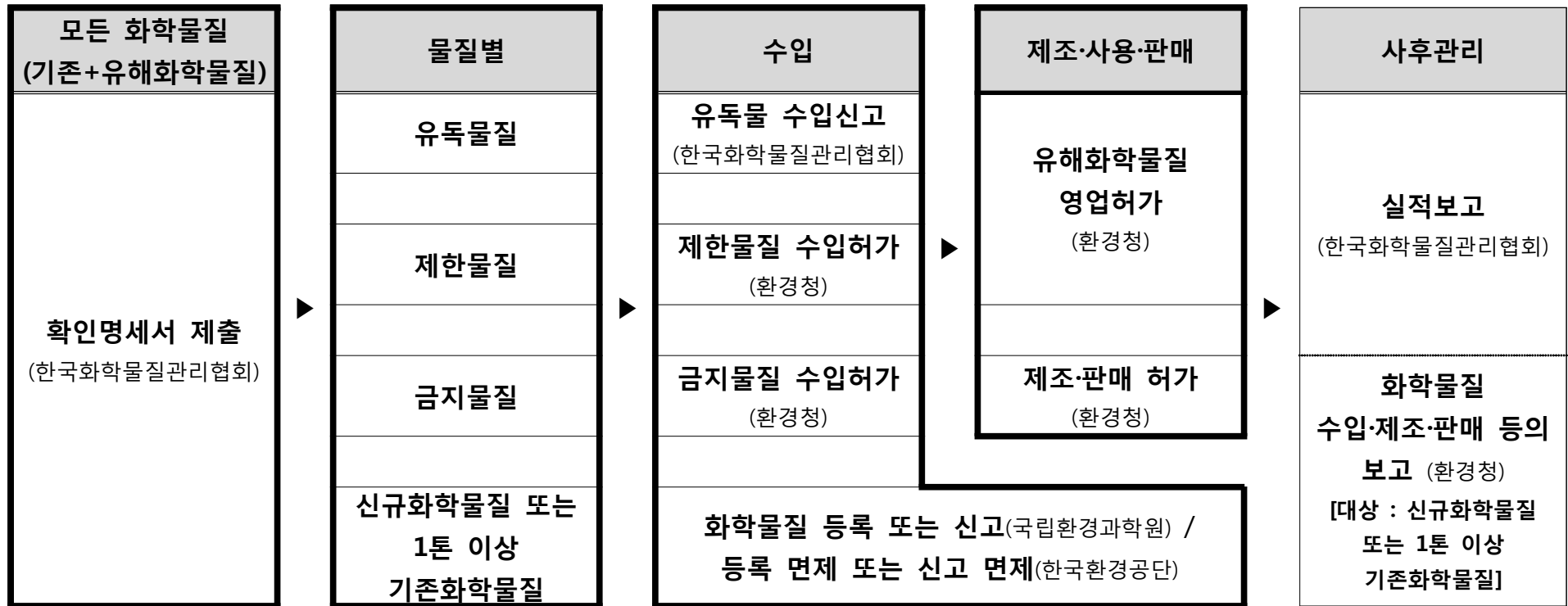
1. **화학물질관리법_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방법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_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행정절차**
4.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또는 신고 면제
5.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및 신고
6. [참고] 적용제외 대상
7. [참고] 규제대상 화학물질 확인 방법

1. 화학물질관리법_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모든 행정절차는 수입·제조·사용·판매 전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 업체에서 진행하여 문제 되지 않으나,

각 연구(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직접 수입·제조·사용·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규제대상 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기존화학물질) 확인 방법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http://ncis.nier.go.kr>) 접속 후, '화학물질 통합검색'에 화학물질명 or CAS 번호 입력하여 검색
 - 기존화학물질 등재 여부 확인(고시번호 존재 여부 확인)

1. 화학물질관리법_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 1) 화학물질을 연구(실험)실에서 **직접 수입 시,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지 확인**
- 2) 대상인 경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제출 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확인제도팀 (☎ 02-3019-6773~6776)
 -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방문 or 우편/등기 이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6층 (방배동, 유니온빌딩)
- 3) **규제대상 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인 경우, 유역환경청(☎ 031-790-2887~8)으로 별도 수입신고, 허가**
 - **규제대상 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기존화학물질) 확인 방법**
 - **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NCIS, <http://ncis.nier.go.kr>)** 접속 후, '화학물질 통합검색'에 화학물질명 or CAS 번호 입력하여 검색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4) **신규화학물질 or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신청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결과통지서 확인
 - 단, 다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인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	(2)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이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	--
 - 화학물질 등록 면제 또는 신고 면제 확인 업무 안내 :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 032-590-4734, 4735, 4737, 4742)

<관련 문의>

- 법률, 법령 : 관리처 안전관리팀 (내선 2761~3)
- 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내 직인 날인 : 산학협력단 구매자산팀(내선 5804)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방법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 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 제조(수입)자 : **학교명(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or 고려대학교) 기재**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 **연구(실험)실 담당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 제조(수입)제품명세, 수입제품(상품)정보 : **공란 없이 작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시)

(1) [] 제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수입

※ 위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려운 만큼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접수번호	상호(명칭)	주소	발급일	처리기간	특사
제조 (수입)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발급일	처리기간	특사
(전화번호:)					

(2) 제조(수입)제품명세

제조(수입)제품명세	① 제1종(위험성)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⑥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용량번호: 제) 중 [] 확인 관련 서류(제조자 [] 제조자 [] 수출자 [] 확인을 위임받은 자)				

(3) 수입제품(상품)정보

수입제품(상품)정보	⑦ 도출 - 규격
------------	-----------

(4) 확인관련 서류

확인관련 서류	상호(명칭) 주소
제출자	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 및 팩스 전자우편
(전화번호:)	

(5)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구분	항목	내용	일련
통제대상 기초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동적 및 정적 평가 결과 관련 법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적대응	[]	[]
	화학물질의 동적 및 정적 평가 결과 관련 법령, 제11조에 따른 동적대응	[]	[]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동적 및 정적 평가 결과 관련 법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적대응	[]	[]
	화학물질의 동적 및 정적 평가 결과 관련 법령, 제11조에 따른 동적대응	[]	[]
⑥ 확인 내용	유독물질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
	허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
	제한물질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
	금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화학물질명(CAS No.)	[]

(6)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제조 [] 수입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7) 제조(수입)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 x 297mm(복합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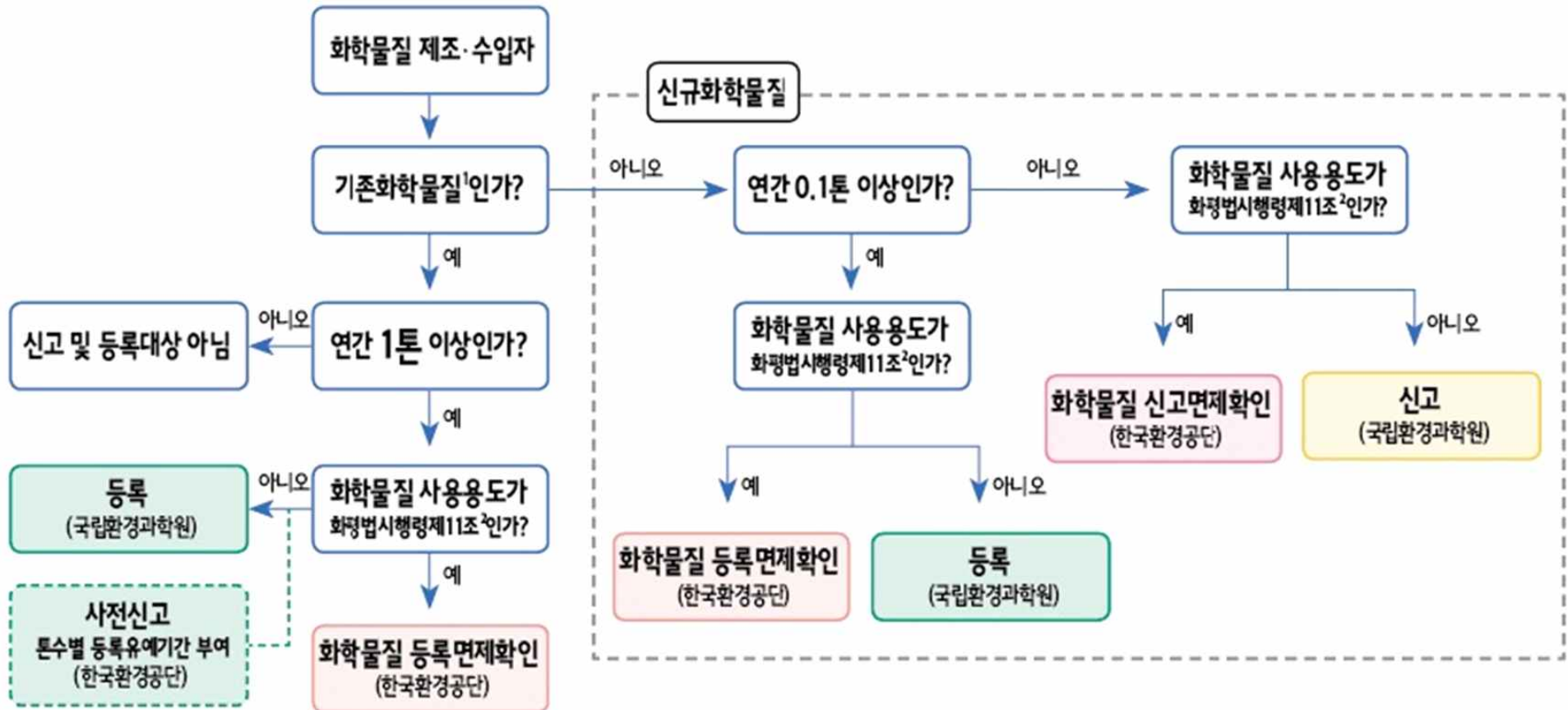
- (1)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을 구분하여 체크
- (2) 제조(수입)자 : 법에서 규정하는 제조(수입)자의 내역을 기재
- 제조자 :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
 - 수입자 :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 (3) 제조(수입)제품명세
- 제품명(상품명) : 제조의 경우 제조된 제품명, 수입의 경우 수입하는 제품명을 기재.
다만, 첨부서류의 제품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수입하는 제품은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로 제품명 입력 불가)
 - 수입국 : 세관 수입신고서(면장)상의 적출국을 기재
 - HSK No. : 수입의 경우 세관 수입신고서(면장)에 명시할 관세·통계통합 분류표의 10자리 품목번호(HSK No.)를 기재
 - ※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관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바람
 - 확인방법

성분명세서	화학물질확인증명서	확인관련서류제출자
제조(수출)자료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아 확인한 경우 ※ 성분이 100% 명시되지 않은 MSDS는 성분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국내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대신하여 ⑥란의 규제대상 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 성분명세서(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등을 적은 서류. 뒷면 성분명세서 예시 참조.
- (4) 수입제품(상품)정보
- 모델 · 규격 :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기재 (단순히Kg 또는 powder 등 단위규격 또는 성상만 기입하는 것은 아님)
- (5) 확인관련서류제출자
- 위의 "제조(수입)제품명세" 내역의 "⑥ 확인방법" 중 "확인관련서류"란에 체크한 경우에는 확인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한 자의 상호,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
- (6) 확인내용
- 등록대상기초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 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함
- (7) 제조(수입)자의 명판·직인이나 서명(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_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행정절차

-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 등록면제확인 대상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 신고면제확인 대상 : 연간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4.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또는 신고 면제

1) 별도 절차 없이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법 제11조)

- 연구(실험)실 스스로 다음에 해당하는 등록 등 신고 면제 대상인지 파악하여 사후점검 등을 대비한 증빙서류 보유

-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하는 화학물질
- ②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③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④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
 - 불순물, 부산물, 광물, 광석, 유리, 식물성 지방·기름, 수소 및 산소, 숯, 활성탄(「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에 한함) 등
 -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체 또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인력, 기계 또는 중력을 이용하거나 물에 용해, 부유, 열을 이용한 수분 제거로 얻은 물질
 - 아미노산 및 그 염류, DNA 또는 RNA를 구성하는 염기, 염기와 당이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 등

2)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아 면제(영 제11조)

(1) 제조·수입 전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등록 등 면제확인 신청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2) 등록 등 면제확인 대상·주기 및 제출서류 (공통 제출자료 -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예정량)

대상	주기	제출서류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연 단위	수출국, 수출량 등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최초 1회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 설명, 실험·분석·연구에 소요기간,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화학물질·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계획 단위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안전관리 계획서(안전관리자 현황, 사후처리방안, 0.1톤 이상은 사후처리결과를 함께 제출) 등
5. 일부 고분자화합물	최초 1회	단량체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수평균분자량 관련 시험자료 등
6. 표면처리된 물질 - 표면처리의 대상물질과 표면처리물질 모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등록된 화학물질인 경우 2)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로 신고된 경우 3) 등록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인 경우 4)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로서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최초 1회	표면처리의 대상물질과 표면처리물질에 관한 등록(등록통지서 또는 등록번호 등),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신고서 등),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신고통지서 또는 신고번호 등) 또는 등록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가운데 해당하는 서류, 공정도식도, 반응구조식, 표면처리비율 등
7. 비분리중간체	최초 1회	공정 도식도 등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최초 1회	공정 도식도, 유출·노출 차단 방법 등

3)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등(규칙 제7조)

- 등록 등 면제확인 변경신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대상

- 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예정량,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 ② 표면처리된 물질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 등록된 경우,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로 신고된 경우,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화학물질로
사전신고되어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 ③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 변경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
- ④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 변경(위탁자가 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

5.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및 신고

1) 중점관리물질의 기준(법 제2조제10호의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
(672종, '19.7.1. 시행 204종, '21.7.1. 시행 468종)[환경부고시 제2018-233호]

- 1)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있는 물질
-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 3)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사람의 폐, 간, 신장 등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4)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상기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2)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법 제32조)

개요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생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기간·방법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개별 제품의 0.1중량퍼센트 초과)된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함유제품신고서를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사진 등과 함께 제출

3)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법 제35조)

개요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안전정보를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 - 소비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
제공정보	(1) 해당 제품명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제한 용도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영업비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미제공 가능.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함.

6. [참고] 적용제외 대상

• 화관법 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	• 화평법 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 제외]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 제외]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3.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 제품

-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 대행업체에서 신고 및 서류 제출은 진행하여 문제 되지 않으나, 각 연구(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직접 수입·제조하는 경우, 반드시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7. [참고] 규제대상 화학물질 확인 방법

- 1) 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NCIS, <http://ncis.nier.go.kr>) 접속
- 2) 화학물질명 or CAS 번호 입력하여 검색 → 결과 확인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소개 SITE MAP ENGLISH

화학물질통합검색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 시험 자료 정보마당 수은 정보

화학물질정보시스템

Cas 번호 등 화학물질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많이 찾는 물질 황산 | 1310-73-2 | 67-56-1 | TEST | 108-88-3

등록 대상
기준
화학물질

유독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

사고 대비
물질

최근 개정고시
고시의 최근동향을 소개합니다.

시험 자료 목록
시험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적 이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지사항

기준화학물질 일부개정 안내
2019-01-28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안내
2018-10-29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현황 안내('19.4.01.)
2018-02-07
웹사이트 이용취약 및 마중도 설문조사 참여바랍니다.
2018-07-24

자료실

[정보공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2019-01-02
혼합물 분류표시 매뉴얼
2018-09-10
[정보공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2018-08-17
[정보공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2018-05-24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소개 SITE MAP ENGLISH

화학물질통합검색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 시험 자료 정보마당 수은 정보

화학물질통합 검색

전체 황산

화학물질 검색

검색결과 총 61건 결과 내 제 검색

검색

10개씩 보기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	기초화학 물질	등록대상 기준화학 물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화평법 규제정보	시험 자료
7664-93-9	Sulfuric acid [이명 : Dihydrogen sulphate; Oil of vitriol.]	황산 [이명 : 황산이나트륨; 황산염.]	KE-32570	321	97-1-405				45	정보보기	
7786-81-4	Nickel sulfate [이명 : Nickel (II) sulphate; Nickel monosulfate; Nickel sulfate; Nickel sulfate (1:1); Nickel(II) sulfate; Nickelous sulfate; Nickelous sulphate; Sulfuric acid, nickel(2+) s alt (1:1).]	황산니켈 [이명 : 모노황산 니켈; 황산 니켈; 황산 니켈 (II); 황산 니켈 (1:1); 황산 니켈(II); 황산, 니켈(2+) 염 (1:1).]	KE-25867	347	2010-1-6 09					정보보기	
7783-35	Mercury sulfate [이명 : Mercuric sulfate; MERCURY (II) SULFATE; Mercury bisulfate; Mercury sulfate (H ₂ SO ₄)	황산수은(II) [이명 : 이황산 수은; 황산 수은; 황산 수은 (H ₂ SO ₄)	KE-23132		97-1-140					정보보기	

-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와 검색 결과가 있어도 “대량생산화학물질”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 “신규화학물질”로 판단
- 대량생산화학물질 :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전 세계에서 천 톤 이상 생산, 수입되는 화학물질